

보도일시

2026. 9. 21(월) 배포시

배포일시

2026. 9. 21.(월) 8:30

당정,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촌 현실 반영한 특별법 제정키로

- 농지 투기는 엄중 단속하되, 불가피한 범위반 행위에 대한 정상화 기회 부여
- 농지이용 현실 반영한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예산 증액 검토키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21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안건을 논의하고,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우선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 다만, 그 외에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현실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유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함으로써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와 연계하여 실경작자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농지은행 장기 임대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등 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서의 복구 실익도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아울러 사후 전용 추진 등을 통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후 전용을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추진하여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당정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농촌 사회에 확산되면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설명하면서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